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13 ~ 1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13. 3. 11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폐지이유

○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어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농업인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시 나무보일러 구입비 중 50만원 한도로 선택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2005.10.05. 제정하였고, 2006년도에 60동/30,000천원 예산편성 지원하였으나, 이후 2007년부터 수요자가 없어 지원을 중단함.

나.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어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으므로 우리 군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3항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3.02.19. ~ 2013.3.1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